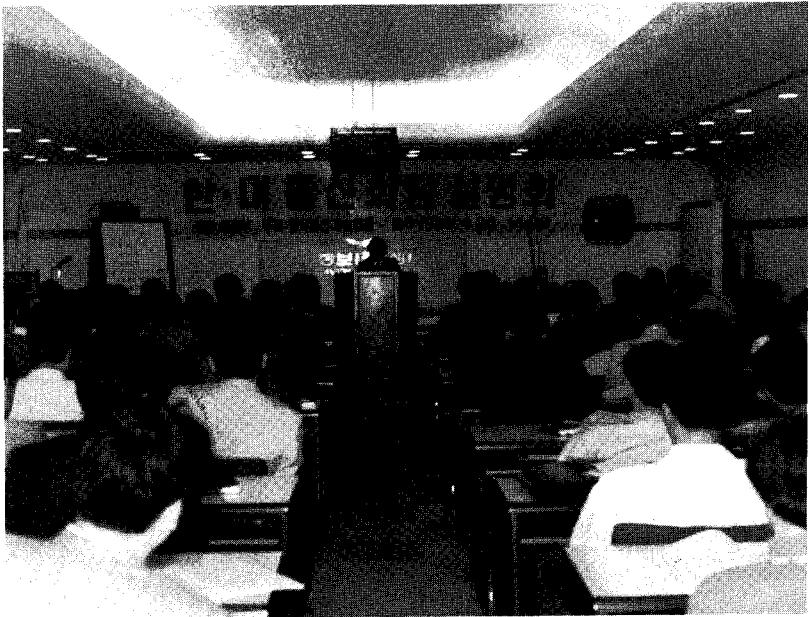


한·미 통신회담설명회



지난 89년 9월부터 90년 2월까지 총5차에 걸쳐 진행된 한·미 통신회담의 배경 및 결과에 대한 설명회가 당협회 주최로 90년 4월 30일 데이콤빌딩 에릭슨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체신부 전파관리국 박성득 국장(전·통신정책국장)의 통신회담의 배경 및 향후 대책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통신기기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질의응답이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진흥과 박창환과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통신산업관련단체의 통신시장개방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설명회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한·미 통신회담 추진배경 및 향후대책 (체신부 전파관리국 박성득 국장)

가. 추진배경 및 현황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통신관련조항이 신설된

것이 88년 하반기였다. 미국은 전산업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적자폭의 감소 및 흑자전환이라는 목표아래 USTR(미 무역대표부)이란 조직을 통해 세계각국과 협상 또는 협상관련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 통신산업의 무역 관련 업무가 USTR에 넘겨지면서 본격적인 통신시

장개방 압력이 88년 말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개방요청내용의 범위 및 시기등은 우리의 시장여건으로는 전적인 수용이 불가능하여 요구 수용을 거부한 결과, 미국은 89년 2월에 EC 와 함께 우리나라를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한 우선 협상대상국(PFC)로 지정하였다. USTR 에서는 종합무역법에 의한 협상추진을 요구하여 왔으나 일방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협상에 불응 하였다.

그후 대미교역량 및 무역흑자 등 현실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통신분야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89년 9 월 1차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90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한·미통신회담이 개최되었다.

1~3차 회담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호 이해도모를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논의는 4·5차회담에서 전개되었다. 구체적인 회담결과는 1차 설명회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자세와 대책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나. 향후 대책

현대의 교역은 시장을 상호개방하고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통신시장개방도 불가피한 현실이며, 국내산업의 성장, 독점배제를 통한 통신시장구조 개선등을 서둘러서 개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상호타협을 통해 보복조치를 면하고, 취약분야의 시장개방을 자연시키며, 시장개방으로 접할수 있는 선진기술을 조기흡수하는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조기확보, 시장개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산업관련한 각계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통신기기 시장개방에 대한 질의응답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진흥과
박정환 과장)

가. 사전설명내용 요약

통신기기분야의 개방에는 인증분야, 표준제정분야, 구매분야, 관세분야로 대별된다.

▶ 관세 분야

미국은 현행관세의 50%를 즉시 인하할것을 요구하였으나, 92년에 OECD 평균관세율 8%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 구매 분야

일반 물품을 GATT 의 정부 구매절차를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나, 통신망장비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본 NTT 구매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표준제정 분야

- 현행 국가주도의 표준제정을 배제하고 민간주도로 표준을 제정하며, 국내의 표준제정 기구는 TTA 이다.
- 미국은 표준의 내용보다는 표준제정절차의 투명성 및 외국기업의 참여 보장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인증 분야

- 미국은 No harm to the network (유선분야) 또는 No harm to the spectrum (무선 분야)의 수준으로 인증기준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 미국의 인증기준과 접근하는 수준의 인증기준을 위해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 송부되어있고, 5월중 승인완료가 예상된다.

특 집

- 현행의 표준규격서는 국가권고표준으로 운영하며, 기술기준 완화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표준적합 표시제도 운영시 활용할 예정이다.

의해 적합하게 시험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인정할 예정이다.

질 의 : 구매제도의 개선내용을 현행과 비교하여 설명을 바란다.

나. 질의 응답

질 의 : 국내 민간표준체정 기구로서의 TTA 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

응 답 :

- 통신기기분야의 국내민간표준이 TTA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어 제정되고, 그 표준이 국가권고 표준으로서 국가인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국가권고표준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 표준의 인정심사는 표준의 내용보다는 제정절차의 투명성, 의견수렴시 공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관련단체간 합의가 되지않은 표준은 국가권고표준으로 채택이 어렵다.

질 의 : 현행 형식승인제도와 향후개선될 제도와의 구체적인 비교설명과 국내 및 해외 인증시험기관의 다원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란다.

응 답 :

- 현행 형식승인, 사용승인, 시험검사 등 의 인증종류는 향후 형식승인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 현재는 KTA 품보단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외 업체, 연구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자체 시험성적서는 정해진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하게 시험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인정할 예정이다.

질 의 : 구매제도의 개선내용을 현행과 비교하여 설명을 바란다.

응 답 :

- 우선 수의계약 조건이 현행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며, 입찰참여 기회부여를 공평하게 하기위해 구매공고 기간이 현행보다 길어질 것이다.
- 통신망장비는 GATT 정부구매절차에 제외되어 있어 일본 NTT 절차를 준용할 예정이다.
- KTA의 중소기업품목은 기존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확대해 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공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질 의 : 자료의 36 page에 있는 허용가능 서비스제공에 관한 원칙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

응 답 :

- DB, DP 분야의 국내서비스 개방은 90년 7월, 국제서비스 개방은 91년 7월로 합의 되었다.
- 고유프로토콜 사용권을 보장하고 다른 망과의 상호접속의무 제거등을 말한다.

